

##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

1. (자격)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.
  - 직업건강간호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;
    - 직업건강간호학 전공자로서 본 학회의 회원이며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,
    - 본 직업건강간호학회지에 적어도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,
    - 박사학위 소지자,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,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.
  - 직업건강간호학문의 세부 전공영역별,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.
2. (정원) 편집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고 논문심사위원 수는 40명 내외로 한다.
3. (절차) 전국 간호(대)학 교수 중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직업건강간호학회 이사 및 감사가 공천하면 직업건강간호학회의 이사회에서 심의·결정하여 사전 동의 후 학회장이 위촉한다.
4. (임기)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5. (특별심사위원)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,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.